

COVID-19로 피해를 입은 직원 및 고용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

2021년 7월 20일

At a glance...

7월 1일, 베트남 정부는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직원과 고용주를 지원하는 정책을 규정하는 결의문 68/NQ-CP를 발표했습니다.

7월 7일, 베트남 총리는 결의문 68을 이행하기 위한 결정문 23/2021/QD-TTG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 사회보장청 및 호치민 및 하노이 사회 보험 기관은 다수의 공문을 발행해 사회 보험료 납부 연기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세부 사항

정부의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산업 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 보험에 대한 고용주의 보험료 납부 면제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0.5%에서 0%로 감면됩니다. 고용주는 동 금액을 COVID-19의 예방과 통제를 지원하기 위한 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동 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용주가 COVID-19 예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호치민시 사회 보험 기관은 공문 2645/BHXH-QLT를 발행하여, 기업이 이러한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대신 기관에서 우편으로 기업에 통지서를 보낼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2. 퇴직 및 사망 수당을 위한 사회 보험 보험료 연기

2021년 4월 대비 인력이 15% 이상 감원된 기업의 경우 퇴직 및 사망 수당 사회 보험료 납부를 6개월 연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보험료 비율은 직원 8%, 고용주 14%로 사회 보험료 대상 급여에 적용됩니다).

결정문 23에는 이러한 사회 보험 납부 연기에 적합한 감원 사례 (근로계약 해지, 근로계약 중단, 한 달에 14일 이상 무급휴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 연기는 2021년 4월까지 퇴직 및 사망 수당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고용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23은 또한 납부 연기의 요청 및 승인을 위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결정문 23에 따르면, 연기 기간 말에 직원과 고용주 모두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연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

공문 2645/BHXH-QLT 및 공문 3164/BHXH-QLT에서 호치민시와 하노이 사회 보험 기관은 결의문 42/NQ-CP 및 결의문 154/NQ-CP에 따라 2020년 사회 보험료 납부 연기 승인을 받은 기업이 현재 결의문 68/결정문23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여전히 연기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세 결의문에 따른 총 연기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세부 사항

3. 고용 유지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고용주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직원 교육을 위한 실업보험 기금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지원금 신청 시점으로부터 이전 12개월 동안 실업보험이 적용되는 직원의 실업 보험료를 전액 납부
- 노동법 제 42.1조에 규정된 구조조정 또는 기술 변경을 이행 중
- 전 분기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에 비해 10% 이상 감소
- 직원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 재교육 또는 직업 기술/자격 향상에 대한 계획이 있음

승인된 교육 계획에 따라 직원 1인당 최대 월 1,500,000 등의 지원금이 최대 6개월 동안 고용주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동 지원금 신청서는 2021년 7월 1일에서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근무 중단 및 업무 재개 관련 급여 지급을 위한 대출

고용주들은 무담보로 사회정책은행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다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a) 노동법 제 99.3조를 준수하며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5일 이상 근무 중단한 직원에게 급여 지급
- b)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업무를 재개로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
 - 운송, 항공, 관광, 숙박 종사하는 기업 및 베트남 직원을 해외 파견한 기업,
 -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관할 당국의 요청으로 운영을 중단한 기타 기업.

최대 대출금은 (a)로 업무가 중단됐거나 (b)로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로 영향을 받은 직원 수의 지역별 최저 임금의 최대 3개월분입니다. 최대 대출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고용주는 연체된 은행 차입금이 없어야 하며 근무 중단 이전 달까지 국가 사회 보험 제도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세부 사항

5. 직원 지원

정부는 또한 다음과 같은 특정 직원을 개별적으로 지원합니다.

- 15일에서 30일까지의 연속 계약정지 또는 무급휴가 중인 직원의 경우 1,855,000동/인.
- 30일 이상 계약정지 또는 무급휴가 상태인 직원의 경우 3,710,000동/인.
- 노동법 제99.3조에 따라 근무 중단 상태에 있고 14일 이상 의료격리대상 또는 당국이 요청한 격리구역에 있는 직원의 경우 1,000,000동/인
- 고용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직원(특정 예외 포함)의 경우 3,710,000동/인.
- 위 경우의 직원이 임신 중이거나 친/입양 자녀를 양육하거나 6세 미만 어린이를 돌보는 경우 1,000,000동/인 추가 지원

동 지원은 일회성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직원(계약 종료자 제외)이 동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주가 본사가 위치한 군의 인민위원회에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신청 접수 마감일은 2022년 1월 31일입니다.

동 지원을 받으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중 하나로 계약정지/무급휴가/근무 중단/계약 종료 시점의 이전 달까지의 의무 사회보험 제도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Contact us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ichard Irwin
Partner - Tax & Legal services
+84 (28) 3824 0117
r.j.irwin@pwc.com



심진보 – 하노이 사무실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4) 3946 2246 Ext. 1011
shim.jinbo@pwc.com



Phan Thi Thuy Duong
Partner – Legal services
+84 (28) 3823 0796, ext. 1508
phan.thi.thuy.duong@pwc.com



손한희 – 호치민 사무실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8) 3823 0796 Ext. 4611
son.hanhee@pwc.com



Eva Jaworska
Partner– Legal services
+ 84 (28) 3824 0118, ext. 1510
eva.jaworska@pwc.com



조수진 – 호치민 사무실
Senior Associate - Transfer Pricing & KBN
+84 (28) 3823 0796 Ext. 4630
jo.sujin@pwc.com

www.pwc.com/vn



facebook.com/pwcvietnam



youtube.com/pwcvietnam



linkedin.com/company/pwc-vietnam

At PwC Vietnam, our purpose is to build trust in society and solve important problems. We're a member of the PwC network of firms in **155 countries** with over **284,000 people** who are committed to delivering quality in assurance, advisory, tax and legal services. Find out more and tell us what matters to you by visiting us at www.pwc.com/vn.

©2021 PwC Legal (Vietnam) Co., Ltd.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Vietnam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